

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

I. 반환대상자

- 등록금 중복납부자, 입학허가 취소자, 입학 포기자
-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
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
-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*한 자
 - *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
-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
-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
 - ※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, 졸업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된 경우,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·편입한 경우 등

II. 반환기준

1. 반환 대상 등록금: 수업료

2.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기준

반환사유 발생일	기간	반환기준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(8. 31. 까지)	8월 31일까지	수업료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(9. 1. ~ 9. 30.)	9월 1일 ~ 9월 30일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(10. 1. ~ 10. 30.)	10월 1일 ~ 10월 30일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(10. 31. ~ 11. 29.)	10월 31일 ~ 11월 30일*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(11. 30. 이후)	12월 1일 이후	반환하지 아니함

*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적용됨
- 2026. 11. 29.이 일요일이므로 11. 30.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반환

2. 대상자별 반환기준

반환대상자	수업료	반환기준
중복납부자, 입학허가취소자, 입학포기자	○	전액 반환
자퇴자, 제적자, 졸업자, 등록 후 휴학자 중 반환 신청자 등	○	반환사유 발생일별 차등(일부) 반환

4. 반환기준 적용일

대상자	구 분	반환기준 적용일	비 고
휴학자 자퇴자 제적자	당해 학기 등록 후 자퇴(휴학)한 자	자퇴일 (휴학일)	
	휴학 중 자퇴한 자 제적자	휴학일	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,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
	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	휴학일 또는 자퇴일	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,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
	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휴학한 자	휴학일	휴학일을 비교,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
졸업소요 학점 취득자	휴학 중 계절수업 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	휴학일	
기타	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부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	휴학일	
	사망자	사망일	

※ 한국장학재단으로의 반환 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(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유보한 학생 중 미복학 자퇴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, 복학 후 휴학 또는 자퇴자는 복학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)

III.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

1.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을 선택한 경우

- (유보)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, **다음학기 등록금**은 “**0원**” 으로 책정
- (반환)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차등하여 등록금 반환금액이 계산되며, **다음 학기 등록금**은 “**전액**” 으로 책정
 - ※ (예시)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6. 9. 10.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, 반환금액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이며, 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
- (특별휴학)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
 - ※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‘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’

2. 장학수혜자가 등록금 유보만 가능한 경우

구분	대상자	적용
국가장학	우선감면 / 개별지급 수혜자 / 개별지급 준비 중*	등록금 반환 선택 불가, 등록금 유보만 가능
교내장학	등록금 전액 감면	

* 장학담당자가 국가장학 대학시스템에 장학 접수등록 입력처리한 자

3. 장학수혜자가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을 선택 가능한 경우

구분	대상자	선택	적용
국가장학	장학재단 선발 전	유보	선발 완료 후 장학금이 개별지급되며, 등록금은 전액 유보되어 다음 학기 0원 책정
		반환	대학에 지급된 장학금이 학생에게 개별지급 되지 않으며, 장학재단에 전액 반환(장학금 지급 취소)
교내장학	등록금 전액 감면 외	유보	납부한 등록금 전액 유보되어 다음 학기 0원 책정
		반환	당해 학기 장학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 학기 등록 시 등록금 전액 납부

IV. 반환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

1. 반환 신청 방법

접수	대상자	제출서류
인터넷	자퇴자 휴학자	- 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부생 → 학적관련 신청 → 학적변동신청(제출서류 없음, 특별휴학의 경우: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제출) ※ 반환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 입력 ※ 기말시험 종료 후 자퇴하는 경우는 당해 학기 성적 처리(성적표 발송) 후 자퇴 처리(자퇴일: 학생 신청일)
우편, 직접 방문	중복등록자	-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 -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※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
	졸업자 제적자	-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※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
	※ 서식 출력: 홈페이지 → 대학생활 → 학교생활서비스 → 학생서식다운로드 ※ 보내실 곳: (03087)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호, 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	

※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관련 증빙서류는 자체 보관하며 반환하지 않음

2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 반환 처리

대상자	반환처리
학자금 대출자	대출금 반환 가상계좌 생성(학교) → 반환(학교→장학재단)
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동의자	- 학적변동신청 화면 하단의 반환서약서 작성(수혜횟수 누적) -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 가상계좌 생성(학교) → 반환(학교→장학재단) ※ 미반환분(학생수혜분)을 학생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혜횟수 1회 누적
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<u>비동의자</u>	- 학적변동신청 화면 하단의 반환서약서 작성(장학금 전액 반환) -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 가상계좌 생성(학교) → 반환(학교→장학재단) - 반환금 가상계좌 생성(학교) → 가상계좌 전달(학교>학생) → 반환(학생→장학재단) ※ 미반환분(학생수혜분)을 학생이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

3. 반환 처리 결과 확인 방법

○ 학교홈페이지(로그인)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련신청 → 학적변동 신청 → 학적상태(자퇴 등) 및 반환금액 확인

※ 학적변동 승인 처리 후 반환까지 약 2주~4주 소요